

육류중 유해성 물질 잔류방지 세부 추진계획

—농림수산부—

농림수산부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축산업 발전 및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'91년도부터 육류내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다.

그러나 지난 6월 농림수산부는 최근 소비자들의 육류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, 국제규약(WTO/SPS)에서도 수입육과 국내산육에 대한 검사에 차별을 두지말 것을 규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국내산 육류의 안전성을 시급히 향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육류중 유해성 물질 잔류방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.

농림수산부의 향후계획은 '95년 7월 1일부터 육류중 잔류 우려 물질에 대하여 집중 검사하여 계도·경고조치 하고 '96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소 및 닭고기에 대하여, '96년 7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고기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거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.

또한 농림수산부는 배합사료 검사내용 및 체계를 개선하고, 위생 및 방역 우수농장 정부인증제도 실시와 잔류물질 조사 프로그램 개발을 시행하는 등의 각종 미비된 관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. <편집자 주>

1. 목 적

- 국내산 육류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축산업발전 및 공중보건 향상 도모
-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

2. 추진경위

- 일본정부에서 '88. 11월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항균성물질(설파제) 잔류검사를 시작하고, 허용기준이상 검출시 반송조치
- 우리부에서는 '89년부터 시험사업으로 육류내 잔류물질 조사시작, '91년부터 전국적인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3. 당면 문제점

- 육류의 잔류물질 방지가 시급함.

- 육류 수출입국가로부터 국내산 잔류물질 검사결과 공표 요구
 -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잔류물질조사를 하여 양축가의 잔류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'91년부터 시작하여 양축가의 잔류방지에 대한 인식이 낮음.
- 육류위생에 대한 국민관심 고조
 - 소비자의 육류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의 수준임.
- 국제규정에(WTO/SPS) 수입육류 검역과 국내산 육류 검사수준에 차별을 둘 경우 검역을 국제교역의 위장된 제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간주
- 잔류물질문제 해결없이 축산업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음.
 - 수입개방하에서 육류위생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 붕괴가 우려됨.
 -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잔류물질 해소가 기본과제임.

4. 유해성물질 잔류원인

휴약기간 미준수	불법약제 사 용	사료오염	사양관리 불 량	계
54.5	27.3	9.1	9.1	100%

※ '89-'93간 수의과학연구소 조사결과

가. 가축사육시설의 낙후

-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전업화 및 사육시설의 자동화가 되지 않아 사육시설이 열악함.
 - 자동환기시설, 난방시설등의 미흡
 - 사료급여시설, 급수시설등의 미흡
 - 닭의 경우 간이시설에서 사육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심함.

나. 양축가와 사료 및 동물약품 종사자의 인식부족

- 양축가의 출하전 비육후기사료급여 미준수 및 동물약품 오·남용
 - 비육후기사료의 생산량이 극히 적음
- 사료 및 동물약품 종사자들의 양축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미흡

다. 질병방역이 미흡

- 종돈장·종계장의 방역위생 미흡
 - 종돈장·종계장의 만성소모성 질병 발생이 많음
- 농장간 질병 전파방지시설 미흡
 - 농장의 질병전파 방지를 위한 차량, 기구, 사람등의 소독시설 미흡

5. 향후 계획

기본방향

- 가축사양, 사료, 동물약품등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인 잔류물질 감소대책 추진
 -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양축가에 대한 계도·홍보 강화
 -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발생 감축 유도

- 종돈장·종계장, 사료, 동물약품 등에 대한 분야별 대책 수립 추진

· 종돈장·종계장의 방역위생강화로 질병 청정화 농장 유도

· 배합사료 관리 강화

○ '96. 7. 1부터는 모든 기준초과 축산물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

- '95. 7. 1부터 축종별 잔류우려물질 집중검사하고 계도 및 경고

· 돼지는 항생물질과 설과제, 소는 항생물질

- '96. 1. 1부터는 경고받은 양축농가의 기준초과 축산물 엄격 조치

○ 잔류물질 검사기능 강화

- 도축장 검사 강화를 위한 검사체계 확립

- 도축장 검사 축산물중 잔류물질 검출시 철저한 잔류원인 추적 및 경위 확인 등

-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장비 보강 및 검사기술교육

○ 미비된 각종 관련제도 정비

- 배합사료 검사내용 및 체계 개선('96. 6. 30이전)

- 위생 및 방역 우수농장 정부인증제도 실시('96. 7. 1부터)

- 배합사료 및 동물약품 사용지침 제정('95. 7. 31이전)

- 잔류물질조사 Program 개발 시행('96년부터 매년)

○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육류중『유해성물질 잔류방지대책 추진협의회』구성 운영

가. 검사 및 검사결과 처리

(1) '96. 7. 1부터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

○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처리

(2) 단계별 강화

○ '95. 7. 1부터 축종별 잔류우려 물질에 대하여 집중검사하고 양성축 출하농장을 추적하여 계도 및 경고

- 돼지고기: 항생제 및 설과제, 쇠고기: 항생제

- 양성축 출하농장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
- 특별관리 농장에서 출하한 가축은 출고보류하고 검사 실시
- '96. 1. 1부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소 및 닭고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
- '96. 7. 1부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고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치

나. 사육관리개선

(1) 종돈장

- 종돈장의 가축질병 전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
 - 종돈장은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 실시
 - 종돈장 입구의 소독시설 설치
 - 모든 돈사 출입구에 소독조 설치 운영
- 입식 종돈에 대한 입식전 30일 이상 격리 사육 및 질병검사 실시
- 종돈장 출하 돼지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밀검사 실시

(2) 사육시설

(가) 축사

- 환기시설, 위생적인 분뇨처리시설, 보온시설 등 설치
- 육성돈과 비육시설의 분리
- 축사면적에 따른 적정사육두수 사육으로 과밀사육 방지
- 소독시설 설치 강화

(나) 급여시설

- 기존시설의 시설개선 및 신규시설시에는 분리사육시설을 의무화
- 자동급여· 급수시설을 사육단계별로 분리 설치
- 질병전파방지를 위한 축사 표준설계서 개발
- 시설개선자금 지원시 상기시설 설치 의무화

다. 사료첨가제 및 동물약품 남용규제

(1) 사료

- 사료검사 강화
 - 배합사료제품 포대에 표시사항과 표시방법

준수(벌크는 휴대)

- 예방제 및 치료제 등의 첨가시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, 사용목적 등 기재
- 주의사항과 휴약기간 등 명시
- 항생제등 동물약품 사용실적 점검
- ※ 위반시 사료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제조업자에게 과징금 부과(허가능력톤당 1만원) 또는 영업정지

◦ 사료검사 제도개선

-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약품 검정을 연차적으로 실시
- '97까지 농약 17종, 동물약품 62종 검정 실시

(2) 동물용의약품

- 동물용의약품의 축산물내 잔류대책 제도개선
 - 첨가제: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약품첨가사용기준(고시) 보완('95. 6말)
 - 치료제: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제한기준(고시 제정)('95. 7말)
 - 동물약품별 사용대상동물·용법·용량 및 휴약기간 규정→출하제한 지시서 발급(수의사 또는 약사→양축가)
- 동물약사감시 강화
 - 배합사료제조업소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동물약사감시강화→강력한 행정조치
-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·홍보 강화
 - 배합사료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제조 및 판매업자, 동물병원 개설자 및 양축농가

라. 가축질병발생 감소를 위한 방역대책의 효율적 추진

(1) 종돈장·종계장에 대한 정기위생검사 실시 강화

- 목적: 종돈장·종계장의 질병 청정화 농장 유도
- 주관: 시·도가족위생시험소(49개소)
- 검색요원 교육: 수의과학연구소
 - 혈청검사 및 미생물검사 기술교육 실시
- 농장 표준방역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강화: 수

의과학연구소

- 검사실시 : 년 2회(상반기, 하반기 각 1회 실시)

(2) 농장간의 질병차단 대책

- 농장간 출입 차량의 소독의무화
 - 가축수송차, 사료수송차, 계란집하장, 도계장, 도축장 출입차량
 - 양계장의 1회용 종이 난좌사용
- 가축매매시 중간상인들을 통한 질병절차 방지
 - 출입자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

(3) 위생 및 방역관리 우수농장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추진

- 대상 : 허가·등록된 종돈장과 종계장
- 목적 : 종돈·종계장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기존 농장과 차별화, 브랜드화 유도로 방역관리 향상
- 인증내용 : 농장의 위생 및 방역관리 상태
 - 소독
 - 청결상태 등 위생, 방역관리와 특정질병 발생 유무검사
 - 양돈장 : 돼지오제스키병, PRRS, AR, 홍막 폐염, 돼지적리, 음.
 - 양계장 : 추백리, MG, MS, 닭티프스
- 인증기관 : 농림수산부, 수의과학연구소
 - 검사실시 : 수의과학연구소, 시·도가축위생 시험소
 - 정기 확인검사 : 미생물분리 및 혈청검사
- 시행계획
 - '95. 12. 31일까지 관계기관·단체 협의회 개최등으로 방법 및 제도확립
 - '96. 7. 1부터 시행

마. 잔류물질 검사체제 정비

(1) 국가 잔류물질조사 프로그램(National Residues Monitoring Program)개발 시행

- 주관 : 수의과학연구소
- '96년부터 매년 모니터링 및 탐색조사 실시(약 600건/연)
 - 항생물질, 설과제 및 농약 등의 잔류에 대한 분포 및 유해성 분석으로 차년도 잔류물질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(매년 10월말)
 - 모니터링 대상 축종별 검사대상물질 시료 채취 및 수송요령, 잔류물질별 검사방법의 회수율 및 검출한계 등 포함
 - '96년부터 프로그램에 따라 잔류조사 실시

(2) 시험연구사업 추진

- 주관 : 수의과학연구소
 - 축산물내 잔류물질 신속검출기법 개발 연구 및 기술보급
 - 위해분석 및 주요관리기준(HACCP) 개발에 의한 생산현장의 위생관리지침 적용에 관한 연구
 - 사료내 동물용의약품등 유해성물질 잔류검사 기법 개발 연구 및 기술보급

(3) 연구용역사업을 잔류물질 방지대책 연계 추진

- 기시행중인 연구용역사업을 잔류물질 방지대책에 맞추어 보완
- 연구주관 : 대한수의사회 신광순
 -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적 안전성 관리대책 개발
 - 기간 : '94~'96(3년)
 - 예산 : '94 현장어로 기술개발사업비 282백만원

'95년 5월 돼지도체 등급 판정 결과

등급	축협 서울공판장		우 성 농 역		유 창 식 품		합 계	
	두 수 (두)	평균경락가 (원/kg)	두 수 (두)	평균 경락가 (원/kg)	두 수 (두)	평균 경락가 (원/kg)	두 수 (두)	평균 경락가 (원/kg)
A	5,177	2,964	2,078	3,003	2,092	3,060	9,347	2,994
B	17,072	2,839	11,047	2,902	6,098	2,961	34,217	2,881
C	21,449	2,632	13,190	2,676	6,061	2,775	40,700	2,668
D	11,942	2,457	5,984	2,513	3,559	2,584	21,485	2,494
E	6,075	1,699	4,445	1,680	1,405	1,824	11,925	1,707
계	61,715	2,591	36,744	2,615	19,215	2,760	117,674	2,626

판정기관 : 축산물등급판정소